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7월 10일, 전진숙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6년 7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6. 9. 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9. 1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6. 9. 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전진숙의원)

최근 외부 자본 및 기업의 영리활동과 연계·결합된 창고형 약국이 등장하면서 약국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약국 개설 과정에서 임대차·자금제공·운영계약 등을 매개로

외부 자본이 약국 운영에 개입하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등록 단계에서 실질적인 운영 관계 및 자금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면허대여 약국 등 약국의 우회적 운영 개입 구조를 예방·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설등록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약국 경영에 개입하거나 이를 제한하는 계약 체결을 금지함으로써 약국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약국 개설등록 전에 비약사의 약국 개설, 면허대여, 1인 1약국 원칙 위반 등 개설등록 거부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 시설의 임대인이나 개설·운영자금 제공자 등 경제적 이해관계자와 약국 경영에 개입하거나 이를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 현행 약국개설등록 신청서에는 사실상 신청인의 면허·소재지 등의 정보만 요구되고, 처리기간도 7일이어서 자금·운영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 확인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개정안은 위법행위를 등록 단계에서 사전에 확인·차단하기 위한 확인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질적인 지배·운영에 이르지 않은 경영 관여 계약까지 포괄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상 금지되는 비약사 개설행위와의 구별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에도 시설의 사용·변경, 자금의 용도, 채권보전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일정한 제한이 포함될 수 있는데, 어느 수준까지 약국 경영에 대한 개입 또는 제한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 개정안은 지자체가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인 계약상 개입·제한의 정도나 약국 운영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므로, 개설등록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판단이 달라질 우려도 있음.
- 또한, 약국 개설등록의 거부는 신청인의 직업수행을 직접 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등록거부 대상은 외부 경제적 이해관계자가 약국의 개설·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거나 약국개설자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경우 등 등록거부의 핵심적인 판단기준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구체적인 계약 유형과 구분 기준 등 세부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서영석)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